‘더탐사와 협업’ 김의겸, 면책특권 유지될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에 대해 경찰이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강진구 더탐사 대표 사건이 검찰에 배당되면서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김 의원이 작년 10월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이세창 前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이 자정 넘은 시각까지 술을 마셨다.”고 의혹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여성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 친구의 통화 녹음이 국회에서 재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장관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한 결과 첼리스트 A씨가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한 ‘가짜 뉴스’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면책특권을 이유로 김 의원을 불송치했습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 의원의 국감 발언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 대법원, '명백한 허위사실'은 면책 안 돼, 국회밖 행위에도 엄격

그러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불법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도 2007년 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이를 적시해 명예훼손한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면책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국한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회 내 발언과는 달리 국회 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인정에 엄격합니다.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에 올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던 故 노회찬 의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도자료 배포의 경우는 면책특권을 인정했지만 인터넷에 해당 내용을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보도자료의 인터넷 게재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국회 내에서의 자유로운 발언과 별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보도자료 배포 행위와 달리 인터넷 게재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고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므로 면책특권 범위가 아니다."고 본 2심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 의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됐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청담동 가짜 뉴스' 사건의 경우에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행위별로 나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김 의원의 국감 발언에 대해서는 '청담동 술자리'가 명백히 허위인 점을 알았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만일 김 의원이 첼리스트 A씨가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면 국회 내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면책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더탐사'의 보도 행위에 대한 김 의원의 관여 정도도 따져 봐야 합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더탐사와 협업한 것은 맞는다'고 했습니다. 녹음된 분량이 몇 시간에 걸친 A씨와 남자친구의 통화 내용인데 자신이 의원실 직원들과 함께 내용을 듣고 필요한 부분만 추려 (국감장에서 튼) 파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판사출신 변호사는 " '협업'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표현이고, 공범으로서 역할을 분담해 수행하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더탐사가 준 정보를 말한 것 뿐이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공모사실이 인정된다면 범행 전반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것이어서 '더탐사가 준 정보를 믿었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경찰이 김 의원에게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갖게 된 '1차 종결권'에서 비롯된 결정입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이에 대한 견제 장치로 불송치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에 한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다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불송치했다가 검찰의 재수사 요청 대상이 됐던 방송인 김어준씨의 경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까지 9개월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청담동 가짜뉴스'의 최종 결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작권자/조선일보)